

건축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1987. 8. 12.

■ 주요골자

- 가.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용도변경의 대상을
위락시설로부터 대중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경우등으로 함
(영 제4조제5항).
- 나. 건축물대장의 사본 발급수수료를
매건당 300원으로 정함
(영 제5조제2항).
- 다. 6층이상인 숙박시설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배연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
(영 제20조제1항).
- 라. 지하층의 설치가 면제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함
(영 제22조의3).
- 마. 지중전선용배관 및 맨홀의
설치기준을 정함(영 제27조의2).

■ 개정이유

건축법의 개정(86.12.31, 법률
제3,899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86.12.29, 대통령령 제12,022호)에
따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증축등의 신고등)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증축등신고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면도 1부
 2. 단면도 1부
- ② 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 2서식의
농·어업용주택등신축신고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평면도·단면도 각
1부(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신축의 경우에는 배치도 1부
③ 법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각 1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구조내력·내화·내장·방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면 1부

- ④ 시장·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하단의 신고증을
절단하여 각각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부표 제8항에 규정된
의료시설을 영 부표
제4항제4호에 규정된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2. 영 부표 제9항제4호에 규정된
사설강습소를 영 부표
제4항제5호에 규정된
태권도장·합기도장·유도장·
요가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변경하거나, 영 부표
제4항제9호에 규정된
예능계강습소·기술계강습소(사

- 무관리분야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영 부표 제10항에 규정된 운동시설을 영 부표 제4항5호에 규정된 정구장·탁구장·헬스크립·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이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4. 영 부표 제11항에 규정된 업무시설을 영 부표 제4항제6호에 규정된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5. 영 부표 제13항에 규정된 판매시설을 영 부표 제4항에 규정된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6. 영 부표 제14항에 규정된 위락시설을 영 부표 제4항에 규정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7. 영 부표 제17항에 규정된 공장을 영 부표 제4항제7호에 규정된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제5조의 제목을 “(건축허가등의 수수료)”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 발급수수료는 건당 300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환기설비를 할 것”을 “개구부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외기에 면하는 벽체의 아래쪽 부분에는 연탄의 연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경 10센티미터 내지 20센티미터의 공기흡입구를 설치할 것”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온수보일러의 온수를 방열관에 공급하여 난방하는 온수온돌의 구조·재료·시공 및 시험방법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은 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이하인 2중창 또는 복층유리(페어글라스)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시간 섭씨도당 킬로칼로리 ($\text{Kcal}/\text{m}^2 \text{h } ^\circ\text{C}$)로 나타낸다.
 4.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 및 출입문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성능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③ 영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 제19조의2** 본문 및 각호중 “주택” 및 “주택등”을 각각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등”으로 한다.
- 제20조본문 및 각호를 동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영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등 개구부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분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구를 설치할 것
 2. 배연구의 크기는 배연에 필요한 유효면적이
 - 1.0제곱미터이상이고, 바닥면적(영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여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22조의2 제1항**중 “영 제55조의2”를 “법 제22조의2”로 한다.
-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영 제47조제1항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양수장·정수장, 공중변소,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관람장,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쓰레기오물처리장, 묘지관련시설, 동·식물원,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관망탑, 공장중 단위면적당 작업인원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공장을 말한다.

제2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면적 0.5제곱미터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래부분에 각각 지름 10센티미터이상의 환기구를 항상 개방된 상태로 바깥공기에 직접 접하도록 설치할 것
- 제2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게 하되, 예비전원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가.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60초이내에 정격전력용량을 발생하는 자동전환방식으로 하되, 수동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나. 2시간이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전력용배관 및 맨홀등의 설치기준) 영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수용설비를 지중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배관 및 맨홀설치의 기준과 수전실의 확보공간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되, 지중전선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배관을 차량등의 통행으로 인하여 큰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보다 깊게, 기타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0.6미터보다 깊게 매설할 것

2. 배관은 지중전선의 배관(4구멍 이상으로서 각 구멍의 지름이 175밀리미터이상인 것)과 지중전력통제용 통신전선의 배관(1구멍으로서 지름이 100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 구분할 것

3. 배관의 굴곡반경이 600밀리미터이상인 구간에 있어서는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부터 200미터이내마다, 배관의 굴곡 반경이 600밀리미터미만인 구간에 있어서는 당해 굴곡부분마다 각 내부의 크기가 가로 1.5미터이상, 세로 2.0미터이상, 높이 1.5미터이상인 맨홀을 설치하고, 직경이 750밀리미터이상인 뚜껑을 설치할 것

4. 수전기기(개폐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당해 건축물의 외부에 가로 2.8미터, 세로 4.6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외부공간이 협소하거나 그 공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내부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제27조의3(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적용의 특례)

영 제82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시설중 도시계획관계법령에서 시설입지에 관한 기준이 특별히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4] 지역에 따른 건물부위별 열관류율표(제19조제1호관련)

(단위 : 킬로칼로리 / 제곱미터 · 시간 · 섭씨도)

지역별 부위별	중부	남부	제주도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0.5이하	0.65이하	1.0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0.35이하	0.45이하	0.65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4이하	0.6이하	0.7이하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복층유리)	2.9이하	3.1이하	5.0이하

* 적용대상지역

지역구분	해당시·도
중부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직할시 · 충청북도 · 강원도
남부	충청남도 · 전라북도 · 광주직할시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대구직할시 · 부산직할시
제주	제주도

[별표 5] 지역에 따른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기준표(제19조제1호관련)

단열재 종류별 지역별 부위별	암면(광석면), 유리면, 난연성발포폴리스틸렌폼, 요소발포보온재, 폴리우레тан폼(단위 : 밀리미터)	기타 재료 : 열전도 저항이 다음의 값에 적용하는 재질의 두께일 것(단위 : 제곱미터시간섭씨도 / 킬로칼로리)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중부	50이상
	남부	40이상
	제주도	30이상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중부	80이상
	남부	60이상
	제주도	40이상
공동주택의 측벽	중부	70이상
	남부	50이상
	제주도	40이상

비고 : 1. 위 표의 각 단열재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열성 자재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2.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경우에 한 한다), 내구성과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충분히 베텔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적용대상지역

지역구분	해당시·도
중부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직할시 · 충청북도 · 강원도
남부	충청남도 · 전라북도 · 광주직할시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대구직할시 · 부산직할시
제주	제주도

정직위엔 금자탑이 부정위엔 모래탑이

온수온돌시공기준

1987. 8. 12

건축법 제23조의 3항 및 동시행규칙 제18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수온돌 시공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온수보일러(이하 “보일러”라 한다)의 온수를 방열관에 공급하여 난방하는 온수온돌의 시공에 관한 구조와 재료 및 시공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 2·1 단 열 층: 온수온돌에서 방출되는 열이 하향으로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열재밑을 단열처리한 층
- 2·2 축 열 층: 방열관으로부터 방출되는 열을 축적시키기 위하여 방열관주위에 골재 또는 시멘트모르타르등을 충진시킨 층
- 2·3 공기방출기: 순환수중에 함유된 기포를 외기로 방출시키기 위한 장치
- 2·4 방 열 관: 온돌속에 온수를 순환시켜 열을 얻기 위하여 매립하는 관

3. 구 조

온수온돌은 바탕층, 방수층, 단열층(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축열층, 방열관, 미장마감층으로 구성된다.

- 3·1 바탕층: 지면에 면하는 바탕은 배합비 1 : 3 : 6 (시멘트: 모래: 자갈)인 콘크리트로 설치하고, 두께 30mm이상이어야 한다.
- 3·2 단 열 층: 단열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 3·3 축 열 층: 축열층의 두께는 40mm이상, 70mm이하이어야 한다.
- 3·4 방 열 관
 - (1) 방열관은 호칭 직경이 15mm 이상인것으로 하고, 관의

간격은 150mm이상, 40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분기되는 1개구간의 배관길이는 50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단, 구멍탄 온수보일러일 경우에는 35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5 미장시멘트모르타르의 품질은 KSF 22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두께는 방열관의 윗표면에서 15mm이상, 25mm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 3·6 배관의 구배는 1/200정도로 하여야 하며, 구멍탄용 온수온돌은 자연순환이 가능토록 배관하여야 한다.
- 3·7 분기되는 방열관의 1개구간마다 공기방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재 료

4·1 단 열 재: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단열재중에서 압축강도 0.9kg/cm^2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 온수온돌이나 가구 등의 하중에 의하여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2 방 열 관: 방열관은 내식성과 내구성이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4·3 축 열 재: 축열재는 골재, 시멘트모르타르, 콘크리트등을 사용한다.

5. 시 공

5·1 기 초

- (1) 지면과 접하지 않는 슬라보인 경우에는 기초 콘크리트 및 방수층을 생략한다.

(2) 방수층은 주변 벽면의 10cm 높이까지 방수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5·2 단 열 층: 단열재는 바닥전체에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3 축 열 층: 축열재의 충진시에 난방배관이 뒤틀리거나 밀리지 않도록 하고, 보온재가 충격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 방 열 관

- (1) 받침대위에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관의 재질에 따라

1m 이내의 적정간격으로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클립프나 철선을 사용하여 간결하여야 한다.

- (2) 매립되는 부위에서는 되도록 이음을 피해야 한다.

5·5 미장마감층: 마감층은 수평이 되도록 하고 바닥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48시간이상 습윤상태로 자연양생하여야 한다.

6. 시 험

6·1 마감층의 평활도: 마감층 표면에 1m 길이의 곧은자를 놓았을때 2mm이상의 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6·2 온수 순환시험: 보일러에 연료를 연소시켜 온수순환 상태를 시험한다.

7. 기 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구조, 재료, 시공방법으로서 본 기준에서 정하는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치 않을 수 있다.

기밀성능기준

1987. 8. 12.

건축법 제23조의 4 및 동시행규칙 제19조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개구부등의 기밀성능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한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거실의 외기면 면하는 창 및 출입문의 기밀성능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기밀성능 시험방법

창의 기밀성능 시험방법은 건설부고시 제201호 ('82. 5. 19)의 "건축물의 개구부 등의 기밀성능시험 방법"에 의하되,

가압시의 풍압차는 30mmH₂O로 하고, 시험체의 틈길이 환산에서 고정창은 제외시킨다.

3. 기밀성능

- 가. 창
시험결과 창의 통기량은 3m³/hm 이하이어야 한다.
나. 출입문

출입문에는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막을 수 있는 기밀재(Weather Strip)를 설치하고 방풍실을 두거나 회전문으로 한다.

건설업 종합정보센터 안내

건설공제조합은 국내건설업의 과학화와 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건설업 종합정보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당 센터는 국내건설업체, 건축사사무소, 설계용역회사를 대상으로 전산시스템과 CAD 시스템, 기술관련 소프트웨어를 구비하고, 교육실, 사용자실을 설치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기술전산시스템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87년도 후반기 교육과정 안내

과 정	내 용	참 가 대 상	일 정	교 육 비
CAD입문	컴퓨터그래픽의 기본개념과 설계 부문의 CAD적용 및 이용사례에 관한 세미나.	경영자 및 관리자, 설계실무자	'87. 10. 13 - 14	15,000원
CAD실습	당센터에 설치된 CAD시스템인 GDS 와 SVS시스템의 이론과 실습	설계실무자	1일 4시간씩 4주	150,000원
GTSTRU DL	범용구조해석 및 설계 PACKAGE인 GTSTRU DL의 이론과 실습	구조분야관리자 및 실무자	'87. 10. 26 - 30 (9:00~16:00)	15,000원
PROJECT/2	미국 PSDI사에서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전세계 1000개사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공사관리 종합 PACKAGE인 PROJECT/2의 이론과 실습	공무, 공사관련 관리자 및 실무자	'87. 9. 7 - 18 '87. 11. 9 - 20 (9:00 - 16:00) 토요일은 제외	30,000원

* 교육비는 부가세별도임.

* 교육신청은 교육개시 5일전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에 관한 기초지식이 없으신분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습니다.

2. 전산서비스 안내

취 급 업 무	내 용
CAD 도면 전산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당조합 GDS, SVS, SYSTEM 이용건축일반도, 투시도, 조감도Colouring, 확대, 축소, 시점별 출력 등
컴퓨터 하드웨어 파워 서비스	당 조합에 오셔서 직접 이용하거나 원거리 단말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소프트 웨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CADGTSTRU DLPROJECT/2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공제조합 전산부(관세청 옆 건설히관 3층)

• 연락처 : 548-0101(교환) 473, 474, 493(구조), 494(공사관리), 495(CAD)